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시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시적성검사 신청을
직계 가족, 의사,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03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13.
3. 회부연월일 : 2026.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¹⁾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시적성검사 신청을 본인 외에 의사, 경찰공무원 및 본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의2(의사·경찰공무원·친족의 신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신청 대상자를 진료한 의사에 한한다) 및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하는 경우,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그 밖의 비밀준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신청과 관련된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차량이 건물이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로 돌진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운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들이 보도되면서, 운전의 적성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운전의 적성검사에는 정기 적성검사²⁾와 수시 적성검사가 있는데, 수시적성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88조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³⁾에 해당할 때 받도록 하고 있음.

수시 적성검사는 대상자를 편입하는 절차와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절차⁴⁾가 있음.

-
- 1)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르면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자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임.
-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자로 편입되는 절차에는 ① 운전자가 소견서를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② 「도로교통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등이 있음.⁵⁾

「도로교통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4]는 개인정보 보유기관, 보유내용, 장애 종류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유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
- 4) 수시 적성검사자는 신체검사서 등을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제3호), 정밀감정인(「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이 의견서를 작성하며,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운전적성에 대한 판정을 실시함.
- 5)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를 기초로 시력장애, 치매,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⁶⁾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89조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통보받으면, 그 중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해야 하며,⁷⁾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통보받은 명단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함.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2025년까지 수시 적성검사자로 편입된 사람은 약 9만명이고, 이 중 기관통보는 약 8만 7천명, 자진신고는 약 3천명 규모임.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기관통보	26,708	24,627	36,183	87,518	29,173
자진신고	885	1,005	1,063	2,953	984
경찰관 요청	58	51	58	167	56
기타	-	26	22	48	16
합계	27,651	25,709	37,326	90,686	30,229

자료: 경찰청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라는 것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본인이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낮다는 점⁸⁾을 고려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충분히 편입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로, 민간 연구기관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의 보도자료⁹⁾에 따르면,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6가지 유형(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뇌전증, 정신질환, 신체장애, 치매)가 발생하는 운전자는 연간 3만 6천명 수준인데, 실제 수시적성검사 피통보자는 1만 4천여명으로 10명 중 6명은 수시 적성검사가 필요함에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해당 연구에서는 수시 적성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8) 본인에게 안전 운전의 장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 등이 있어 보임.

9) 삼성화재 2021년 6월 18일 보도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 발표

본인 외 가족, 의사 등 제3자도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운전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본인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편입되기 위한 신고를 거부하지만, 주변의 가족, 이웃 등이 안전 운전 장애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운전자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안전운전에 장애 사유가 있는 사람을 진료한 의사, 경찰관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장애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시 적성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89조의2제3항은 의사, 경찰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신청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등에 따른 비밀준수에 관한 법률¹⁰⁾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안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서는 가족, 친지가 구체적인 위험 운전 상황, 행동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의학적 상태, 의학적 손상 부위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외 사례

국 가	신청 주체	신청 내용
미국	· 가족, 친지 등 · 의사(주치의, 응급 의료진) · 법집행관, 경찰	· 가족, 친지 등: 의학적 상태, 위험 운전행동 유형 · 의사 : 환자치료 상황 및 약물치료 여부, 면허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 · 경찰 : 의뢰 사유, 의학적 치료 여부
호주	· 가족, 친지 · 의사	· 가족, 친지 : 의학적 상태 및 구체적인 위험운전 상황 기술 · 의사 : 운전적합성 평가 결과 및 의학적 근거, 운전 가능한 면허조건
영국	· 의사	· 의사 : 의학적 상태/진단명, 운전적합성 여부, 운전중단 권고 여부
캐나다	· 의사 · 가족	· 의사 : 안전운전 위험 상태 여부, 의학적 손상 부위, 인지적 손상 수준, 면허취소 여부 권고 · 가족 : 위험운전 상황 또는 행동, 치매 등 의학적 상태 등
뉴질랜드	· 의사	· 의사 : 의사권고 수용 여부, 운전중단 또는 운전조건 제시, 신고 사유(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의학적 상태 등), 필요시 전문가 평가 권고

자료: 경찰청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제89조의2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체장애 등에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협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¹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 주체에 의사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²⁾

그리고, 문언 측면에서 개정안 제89조의2는 의사, 경찰공무원,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에 대하여 수시 적성

11)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본 검토보고서 10면과 11면에 기재되어 있음.

12)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출생통보제가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89조의2는 본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의사 등 제3자가 하는 행위를 신청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89조와 같이 개인정보의 통보 또는 신고 등의
용어로 규정할 필요성 등¹³⁾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경찰청은 현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대상자 편입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 등의 수시 적성검사 신청이 필요하다는 다수 연구 결과와
유사 해외 제도가 존재하며, 후천적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경찰·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는 의료현장과 환자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의 역할은
의학적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제도는 재량 규정으로 의료현장의 신뢰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13) ‘신청’ 용어를 ‘통보’ 또는 ‘신고’ 등으로 수정하는 경우 개정안 제89조의2 내용을 신설하기 보
다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89조와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 밖에 개정안 제89조의2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 부분을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 제89조의2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
사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에 대하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목적의 의학적 판단이 행정조치로 연결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행정적 판단의 근거로 오인되어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의료인이 불필요한 민원·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의료인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진료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아울러 제도 시행 시, 환자가 운전면허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치료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은폐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임. 특히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 관리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결과적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확보보다 오히려 치료 중단과 관리 공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4]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 기관 현황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 (제58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	보유내용	근거 법조문	장애 종류
1.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시력장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
2.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5.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각장애인(시력으로 인한 장애에 한정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6. 치료감호시설의 장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력 감퇴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 정보	「국민연금법」 제67조	
7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치매
8.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애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장애 가. 제1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나. 제2급 다. 제3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제4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마. 제5급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바. 제6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사. 제7급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 아. 제8급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자. 제9급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차. 제10급 중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카. 제11급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타. 제12급 중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 파. 제13급 중 제1호 및 제2호
9. 보험료를 산출기관의 장 (보험개발원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장애 가. 제1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나. 제2급 다. 제3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제4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마. 제5급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바. 제6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사. 제7급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아. 제8급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자. 제9급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차. 제10급 중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카. 제11급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타. 제12급 중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 파. 제13급 중 제1호 및 제2호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